

보험계약대출 약정서

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칭함)의 보험계약자인 본인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금의 금전차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 및 약정합니다.

제1조 [거래조건]

- 대출개시일 :
- 대출기간 : 첨부한 계약별 세부 거래조건 표에 명시한 대출만기까지의 기간으로 대상계약의 보험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.
- 대출한도 :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 해지환급금 또는 예상 만기환급금의 일정비율로 정해지며, 추후 변동가능합니다.
(예: 연금저축은 연금개시전 해지환급금의 95% 이내, 연금개시후 해지 환급금의 85% 이내)
- 이자율 :
(산정기준 : 기준금리 + 가산금리. 세부사항은 첨부한 계약별 세부 거래조건 표 참조)
- 이자납부시기 : 매월 일
- 이자 미납시 처리기준 : 이자 미납시 해당이자를 이자납부일의 다음날 원금에 가산하고, 그 이후 이자는 가산된 원금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.
- * 변제의 사유 및 상계·차감처리, 주소변경통지 의무 등은 약정서 제5조부터 제9조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제2조 [정의]

- ① “보험계약대출”이라 함은 회사의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대출한도, 방법에 따라 금전을 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.
- ② “보험계약대출금”이라 함은 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회사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말합니다.
- ③ “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”이라 함은 보험계약대출의 기초가 되는 회사와의 보험계약을 말하며,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.

제3조 [보험계약대출기간 및 원리금상환]

- ① 보험계약대출계약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기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계약별로 정한 기간으로 하며, 상환기간 내에 언제든지도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.
- ② 보험계약대출대상 보험계약의 만기와 대출만기가 달리 설정되어 있는 경우, 대출만기 1년 이내에는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- ③ 연금보험의 경우, 연금개시 이후에는 보험계약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④ “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이 없는 보험계약”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⑤ 보험계약대출의 대출만기 도래 전에 대출한도가 조정되거나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제4조 [이자의 납입 및 방법]

- ①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이자율은 보험계약대출계약별로 정한 이자율로 하며, 보험계약대출기간 중도에 회사의 보험계약대출 이자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동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변동이자율을 적용합니다.
- ② 보험계약대출이자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매월 이자 납입일에 납부하며, 이자 납입일을 경과하여 이자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

- 따라 이자 상당액은 보험계약대출금에 합산(月 1회)됩니다. 그 이후의 이자는 미납 이자가 합산된 보험계약대출금에 의해 부과됩니다.
- ③ 이자의 납입방법은 보험계약대출계약에 의해서 회사와 계약자간에 정한 방법으로 하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사에 내방하여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.
 - ④ 이자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에는 이자납입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동이체 이체일을 맞추기 위하여 이자를 수납 또는 인출할 수 있습니다.
 - ⑤ 이자납입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칠 경우 이자납입은 그 이후 최초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.
 - ⑥ 이자납입방법이 자동이체인 경우에 이자의 납입방법 및 납입일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동일 보험계약자의 다수의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에서 다수의 보험계약대출계약이 성립한 경우라도 회사는 이자납입일과 자동이체 계좌를 보험계약자별로 통합 청구하여 수납 또는 인출합니다.
 - ⑦ 보험계약자별 보험계약대출금액의 합이 회사에서 정한 금액 이하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납입하여야 할 이자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원금의 합계액을 청구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.
 - ⑧ 회사는 이자납입 지연시 안내문을 회사가 정한 수령방법(안내장, SMS, e-mail 등)으로 매월 제공할 수 있습니다.
 - ⑨ 이자납입 사전안내, 이자납입 지연에 대한 제반안내(안내장, SMS, e-mail 등)는 회사의 법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.
 - ⑩ 보험계약대출 실행일에 상환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이자를 수납하여야 합니다.

제5조 [변제의 사유 및 절차]

- ①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독촉이나 통지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는 즉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합니다.
단, 회사에서 연장을 승인한 경우는 제외됩니다.
 1. 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기간이 만료되거나, 대상계약이 무효로 된 때
 2. 2003년 10월 1일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대상 보험계약이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해지되고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한 때
 3. 2005년 4월 1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을 기초로 한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대상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때
- ② 제1항 2호의 경우에 회사는 해당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 해지일 7 영업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.
- ③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계약사항 변경이나 기타사정으로 해지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, 본인은 초과분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.

제6조 【지급 시 우선변제】

보험계약대출대상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제지급금(환급금, 보험금, 분할보험금, 연금 등)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, 회사는 대출기간의 만료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계약대출 대상계약의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등에게 지급할 제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 및 비용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 등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.

제7조 【보험계약의 소멸】

상환기일 전에 보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, 그 소멸일로써 상환기일에 도달한 것으로 하여 회사가 지급할 금액(보험금 및 제지급금)에서 비용, 대출이자 및 원금의 순으로 공제합니다.

제8조 【보험계약의 무효】

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 회사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계약자에게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제9조 【주소·연락처 변경의 통지】

-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.
- ② 계약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,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이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
- ③ 단,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표시(보험계약의 해지)인 경우에는 내용 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.

제10조 【우선상환】

보험계약자는 대출원리금의 우선상환을 위하여 회사를 질권자로 하여 대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보험계약대출계약의 보험금 및 제지급금 중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상당액의 질권설정을 본 증서로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,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전액에 대한 상환이 있는 경우 등 질권설정은 종료됩니다.

제11조 【부대비용】

- ① 보험계약대출에 소요되는 인지세 및 기타 비용은 보험계약자와 회사가 각 50%씩 부담합니다.
- ② 온라인 매체 등을 이용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발생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합니다.

제12조 【준용규칙】

-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삼성화재 “여신거래기본약관”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를 준용하여 적용합니다.
- ②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약관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.

제13조 【약관변경】

-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,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, 회사는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.
-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 통지합니다. 다만,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-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- ⑤ 회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.